

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

등록번호 제 호

상 호
(명 칭)

성 명
(대표자)

(사업장)

소재지

(실험실)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
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(지방)환경청장
수도권대기환경청장

직인

<변경 사항>

[illegible]

<처분 사항>

[illegible]

<참고 사항>

[illegible]